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대체공휴일 진료비 가산 적용 관련 안내

- 귀 기관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일부개정·시행('23.5.4.)되어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 및 '12월 25일(기독탄신일)'이 추가됨에 따라, 건강보험 수가 공휴일 가산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 참고
- 부처님오신날 대체공휴일('23.5.29.) 진료 중 일부 수가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에 따라 공휴일 가산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각 의료기관은 사전 예약된 환자에 대해 공휴일 가산을 적용하여 공단부담금을 청구하는 한편, 환자 본인부담금은 평일과 동일한 수준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조치는 「의료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영리목적의 환자 유인·알선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보건복지부장관



수신자 대한병원협회장, 대한의사협회장, 대한간호협회장, 대한치과병원협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장, 대한한방병원협회장, 대한한의학협회장, 대한요양병원협회장, 대한약사회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보건복지부장관(보건복지상담센터장)

주무관	박혜진	보건사무관	배윤영	보험급여과장	전결 05/22 정성훈
협조자	보건사무관 조영대	행정사무관	박소영	서기관	이유리
시행	보험급여과-2433		2023.05.22.	접수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어진동)	보건복지부	/ eil lenpark127@korea.kr
전화	044-202-2743	전송	044-202-3937	/ eil lenpark127@korea.kr	/ 공개
				위험할 땐 119, 힘겨울 땐 129	